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12. 16.] [해양수산부고시 제2020-318호, 2020. 12. 16.,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 대상)

제2장 정박지와 항로

제3조(정박지)

제4조(정박금지구역)

제5조(항로)

제6조(수리 장소)

제3장 항법

제7조(부산항 전체 항법)

제8조(북항 항법)

제9조(남항 항법)

제10조(감천항 항법)

제11조(다대포항 항법)

제12조(신항 항법)

제4장 운항금지구역

제13조(유선 운항금지구역)

제14조(신항 운항금지구역)

제15조(광안대교 인근 운항금지선)

제16조(잔교 운항금지)

제5장 보칙

제17조(속력 제한)

제18조(해양사고 조치)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12. 16.]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 제2020-318호, 2020. 12. 16., 전부개정]

부산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환경과), 051-609-655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과 「해사안전법」에 따라 부산항 수상구역과 수상구역 밖의 정박지, 항로, 항법, 속력 제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 운항 안전 확보와 해상교통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규칙은 「항만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라 설정된 부산항과 이 규칙에 따라 설정된 항로, 정박지(이하 "부산항"이라 한다.)를 입출항하는 모든 선박에 적용한다.

제2장 정박지와 항로

제3조(정박지) 「선박입출항법」제5조제1항에 따른 정박지는 별표1과 같다.

제4조(정박금지구역) 「선박입출항법」제6조제3항에 따른 정박 금지구역은 별표2와 같다.

제5조(항로) 「선박입출항법」제10조제1항에 따른 부산항 항로는 별표 3과 같고, 「해사안전법」제31조제1항에 따른 가덕수도(입출항항로)는 별표 4와 같다.

제6조(수리 장소) ① 「선박입출항법」제37조에 따라 선박 수리를 위하여 지정한 장소는 별표 1 정박지 중 "N-5" 정박지를 말한다.

②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기상, 선박 크기, 해상 조건 등을 이유로 제1항에 따른 장소에서 선박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그 외의 장소에서 수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3장 항법

제7조(부산항 전체 항법) 부산항 항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항 내에서 운항하는 관제대상선박은 선박교통관제관서의 선박교통관제에 따라야 한다.
2. 시계(視界) 제한이 있을 때 모든 선박은 다른 선박의 운항에 위험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안전한 속력으로 운항하여야 한다.
3. 태풍 또는 기상특보(강풍, 풍랑) 발효에 대응하여 부산항 선박대피협의회(비대면 회의 포함)의 피항 명령이 있으면 해당 선박은 안전한 수역으로 대피하여야 한다.

제8조(북항 항법) 북항을 입출항하는 모든 선박은 다음 항법에 따라 운항하여야 한다.

1. 부산대교 하단 협소한 수로를 운항하는 모든 선박은 수로 중앙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운항하여야 하며, 선박을 정지하거나 수로를 횡단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5부두 물양장, 시민부두를 출입하는「선박입출항법」제2조제5호에 따른 우선피항선은 북항 내항방파제 안쪽 구역에서 입항 또는 출항하거나 이동하는 여객선과 화물선 등의 진로를 피하여 운항하여야 한다.
3. 오륙도 방파제 또는 조도 방파제 인근 수로를 운항하고자 하는 선박의 선장은 기상, 화물 적재 상태, 선박 톤수·전장·폭·높이, 항세, 수심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사전에 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이를 알려야 한다. 다만, 「선박입출항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위험물을 적재한 선박은 운항을 제한한다.
4. 부산항대교 아래에서 해수면 기준 높이 60m 이하(크루즈선은 높이 63m 이하) 선박만 운항 가능하며, 부산항대교를 운항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풍속, 파고, 조류 등 기상을 감안하여 안전하게 운항하여야 한다. 크루즈선이 부산항대교 아래를 운항할 경우 항로 중앙부를 중심으로 좌우 100m 이내로 통과하여야 하며, 다른 선박과 교차하여 운항할 수 없다.
5. 부산대교 또는 영도대교 아래를 통과하는 예·부선은 1척(부선 포함)만 예인할 수 있으며, 선박을 결속(結束)하여 운항하여야 한다.
6.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전면 해역을 운항하는 모든 선박은 가능하면 기준점(N 35-06.75, E 129-03.5)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운항할 수 있도록 한다(별표 6 참조). 다만, 가목이외에는 권고사항으로 한다.
 - 가.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 전면 해역을 운항하는 모든 선박은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로 입출항하는 여객선과 화물선이 우선 입출항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나. 5부두 물양장과 제4항로를 운항하고자 하는 선박은 가능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부두 끝단과 평행하게 100m 간격을 띄운 다음 폭 200m 이내의 가상 항로를 따라 운항할 수 있도록 한다.
 - 다. 5부두 물양장에 입항하고자 하는 선박은 기준점을 좌현에 멀리 두고 가능한 침로 125도로 운항하고, 출항하고자 하는 선박은 우현을 부두에서 100m 간격을 띄우고 가능한 침로 305도로 운항하여야 한다.
 - 라. 5부두 물양장과 제1항로 사이를 운항하는 선박은 제1항로 끝단(N 35-06-21.2 E 129-03-39.8, N 35-06-30.2 E 129-03-47.9)과 기준점을 가상으로 연결한 선의 오른쪽에서 가능한 침로를 000도, 180도로 운항할 수 있도록 한다.
 - 마. 제4항로에서 제1항로로 운항하는 선박은 가능한 부산항대교 쪽으로 근접하여 운항할 수 있도록 한다.
 - 바.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 전면 해역에서 무리한 횡단, 불필요한 행위 등은 피하여야 하고, 야간에 운항할 경우 「해사안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등화(燈火)를 표시하여야 한다.
7. 감만부두 동측 안벽과 신선대 부두 사이를 출항하는 선박은 기준점 1(N 35-06.218, E 129-05.421)과 기준점 2(N 35-06.218, E 129-05.487)사이, 입항하는 선박은 기준점 2를 좌현에 두고 상대 변침각이 90도가 되도록 운항하여야 한다.

제9조(남항 항법) 남항대교 하단 협소한 수로를 운항하는 모든 선박은 수로 중앙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운항하여야 하며, 선박을 정지하거나 횡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감천항 항법) 감천항 제4부두와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을 출항하는 선박은 제4번 부표를 좌현에 두고 선회하여 주항로의 출항 항로로 진입하여야 하고, 감천항 제4부두와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으로 입항하는 선박은 제4번 부표 진입 전 타 선박의 입출항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다대포항 항법) 다대포항을 입출항하는 모든 선박은 안개 등으로 시계(視界)가 제한될 경우 다른 선박 운항에 위험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안전한 속력으로 운항하여야 한다.

제12조(신항 항법) ① 제5항로와 가덕수도를 이용하는 관제대상선박은 부산신항해상교통관제센터의 선박교통관제에 따라야 한다.

② 가덕수도를 항해하는 선박은 지정된 항행 방향에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③ 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 범선,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가덕수도를 따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가덕수도 바깥 해역을 이용하여 항행할 수 있다.

④ 가덕수도 출입구 부근에서 어로(漁撈)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가덕수도를 출입하려는 다른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운항금지구역

제13조(유선 운항금지구역) ① 「선박입출항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로 정한 해역에서 유선사업자는 유선업을 목적으로 선박을 운항할 수 없다.

1. 나암 최남단(N 35-05-49.10, E 129-07-7.14), 조도 방파제 동측 끝단(N 35-04-45.05, E 129-06-18.91), 조도 방파제 서측 끝단(N 35-04-43.12, E 129-05-51.35), 조도 동측(N 35-04-45.70, E 129-05-44.74)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의 북측 해역과 검역 장소(「검역법 시행규칙」별표1제1호) 중 다음을 제외한 해역

가. 제1항로(다만, 제1항로를 횡단하는 경우 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 지시를 따라야 한다.)

나. 1지점(N 35-06-57.70, E 129-03-19.21)과 2지점(N 35-06-27.20, E 129-03-59.52)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의 남서측 해역

다. 제4항로와 제1항로를 입출항하는 경우만 허용한다.

2. 두도 최남단(N 35-02-49.40, E 129-00-56.40)과 영도 최남단(N 35-02-57.34, E 129-05-10.84)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의 북측 해역 중 다음을 제외한 해역

가. 1지점(N 35-03-10.71, E 129-00-54.74)과 2지점(N 35-04-33.90, E 129-01-29.62)을 연결한 해안선에서 남외항 2번 정박지 서측 경계선까지 해역

나. 영도 최남단(N 35-02-57.34, E 129-05-10.84)에서 부산 남항 항계 동측 지점(N 35-04-50.13, E 129-02-23.42)을 연결한 해안선에서 정박지(남외항 1번, 3번) 동측 경계선까지 해역(다만, 30톤 미만 유선은 운항할 수 있다.)

다. 제2항로

3. 감천항 서방파제와 동방파제를 연결하는 선의 북측 해역과 제3항로

4. 제5항로와 가덕수도

5. 영도대교와 부산대교 하단 해역

② 제1항에서 정한 해역 외에서 운항하고자 하는 유선사업자는 입·출항 또는 정박하고 있는 다른 선박 운항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마을어업권 설정 구역에서 주의를 하여 운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정한 유선 운항구역을 운항하는 유선은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레이더 등의 선박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30톤 미만의 유선에 한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만 설치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로 정한 유선 운항금지구역에 3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유선업을 목적으로 운항하고자 하는 유선사업자는 사전에 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신항 운항금지구역) 「선박입출항법」제2조제5호에 따른 우선피항선을 제외한 모든 선박은 다음 각 호 지점을 연결한 선의 안쪽 해역으로 진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서컨테이너 예정 부두 동측 금지수역에서 1천 톤 이하 선박과 항만공사용 부선의 운항은 허용한다.

1. 삭제
2. 서컨테이너 예정 부두 동측(아래 지점을 연결한 선과 서컨테이너 예정 부두 예정지 사이 수역)
 - 가. N 35-04-38.9, E 128-47-06
 - 나. N 35-04-35.5, E 128-47-05.5
 - 다. N 35-04-21.1, E 128-46-49
 - 라. N 35-04-07.6, E 128-46-49
 - 마. N 35-03-52, E 128-46-49
 - 바. N 35-03-31.2, E 128-46-41.88

제15조(광안대교 인근 운항금지선) ① 다음 각 호 지점을 연결한 선으로 총톤수 300톤 이상의 모든 선박은 진출입하거나 횡단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용호만 매립부두를 지정 계류지로 이용하는 선박과 군함, 경찰용 선박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선박은 운항을 허용한다.

1. 육지 끝단(북위 35도 08분 06.00초, 동경 129도 06분 44.00초)
2. 광안대로 남측 축도부 남단(북위 35도 08분 08.90초, 동경 129도 06분 53.20초)
3. 북위 35도 08분 33.20초, 동경 129도 08분 51.60초

②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선박 외에 ‘광안대교 인근 운항금지선’을 운항하고자 하는 선박은 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6조(잔교 운항금지) 모든 선박은 잔교 하부에 진입할 수 없다.

제5장 보칙

제17조(속력 제한) ① 「선박입출항법」제17조제3항과 「해사안전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부산항을 운항하고자 하는 모든 선박은 별표 5로 정한 항행 최고 속력 범위 안에서 운항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항 북외항 구역에 지정한 속력은 권고사항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상황을 미리 통보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고시 외에 별도로 속력 제한을 정한 경우 이를 따라야 한다.

1. 기상악화 등 긴급 피난선박
2. 인명구조 또는 해난구조에 종사하는 선박, 응급환자 후송 선박
3. 항로 횡단 선박(부산 신항 가덕수도 주의해역만 해당)
4. 군함(군사작전), 경찰용 선박, 단속·오염방제·항로표지관리 목적 관공선, 도선선

5. 기타 긴급을 요하는 선박

- 제18조**(해양사고 조치) ① 부산항에서 해양사고가 일어나 선박이 위험하거나 다른 선박 항행 안전이나 시설물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선박의 선장은 위험 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조치를 취한 선장은 해양사고 발생과 조치 사실을 지체 없이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경찰서나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020-318호, 2020. 12.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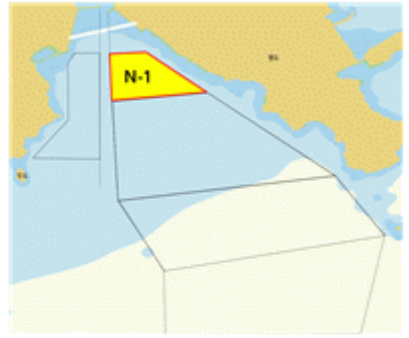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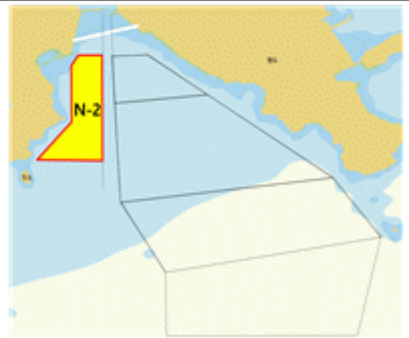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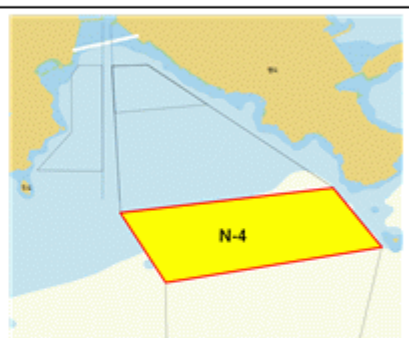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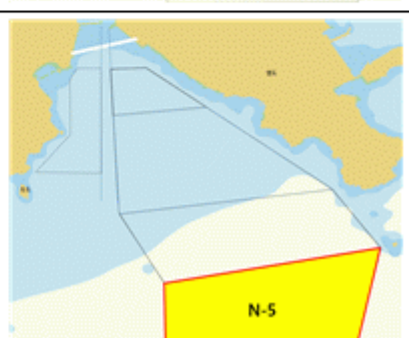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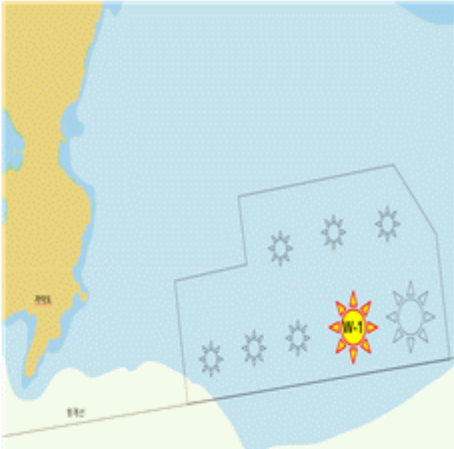

【별표 1】 정박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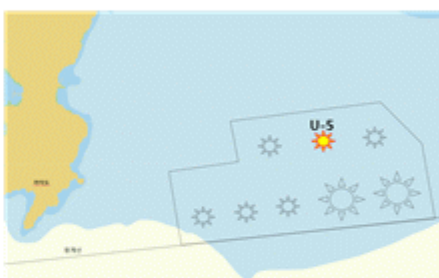
① 작업 및 대기

| 명칭 | 위치(경위도) | 시설능력(G/T,척) | 정박지 위치도 |
|--------------|--|-------------------------|---------|
| E-1 | N 35-06-11.1, E 129-02-58.9 | 5,000이하 ×1 | |
| E-2 | N 35-06-22.1, E 129-03-10.9 | 10,000이상 × 1 | |
| O-2 | 다음 각 호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의 안쪽 해면 1. N 35-05-46, E 129-04-06 2. N 35-06-00, E 129-04-17 3. N 35-05-22, E 129-04-30 4. N 35-05-40, E 129-04-50 | 3,000미만 × 4 | |
| M-7 | N 35-05-21.1, E 129-04-55.9 | 10,000미만 × 1 | |
| M-8 | N 35-05-14.1, E 129-05-11.9 | 10,000이상 × 1 | |
| M-9 | N 35-05-02.1, E 129-05-27.9 | ㄷ | |
| 수영판 (S-1) | N 35-08-51.1 E 129-08-26.8 | 10,000이하 ×1 (반경200m) | |


② 작업 및 대기

| 명칭 | 위 치(경위도) | 시설능력 (G/T,척) | 정박지 위치도 |
|-------------------------------------|--|--|--|
| N-1 (남외항 1) | 다음 각 호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의 안쪽 해면 1. N 35-04-35.1, E 129-02-00.0 2. N 35-04-35.1, E 129-02-21.5 3. N 35-04-01.7, E 129-03-11.1 4. N 35-04-01.7, E 129-02-03.9 | 1,000 미만×8 |  |
| N-2 (남외항 2) | 다음 각 호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의 안쪽 해면 1. N 35-04-35.2, E 129-01-35.5 2. N 35-04-35.2, E 129-01-53.4 3. N 35-03-10.8, E 129-01-52.4 4. N 35-03-10.6, E 129-01-02.2 5. N 35-03-41.3, E 129-01-29.7 6. N 35-04-26.9, E 129-01-29.7 | 3,000 미만×7 |  |
| N-3 (남외항 3) | 다음 각 호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의 안쪽 해면 1. N 35-04-01.7, E 129-02-03.9 2. N 35-04-01.7, E 129-03-11.1 3. N 35-02-55.9, E 129-04-48.2 4. N 35-02-39.5, E 129-02-13.5 | 1,000 미만×2 1,000~3,000×5 3,000~10,000×11 |  |
| N-4 (남외항 4) | 다음 각 호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의 안쪽 해면 1. N 35-02-39.5, E 129-02-13.5 2. N 35-02-55.9, E 129-04-48.2 3. N 35-02-09.6, E 129-05-23.7 4. N 35-01-36.7, E 129-02-38.1 | 3,000~16,000×4 16,000~24,000×4 |  |
| N-5 (남외항 5) 부산항 항계 외곽해면 | 다음 각 호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의 안쪽 해면 1. N 35-01-36.7, E 129-02-38.1 2. N 35-02-09.6, E 129-05-23.7 3. N 35-00-11.3, E 129-04-48.1 4. N 35-00-11.5, E 129-02-38.1 | 10,000~30,000×7 80,000 이하×2 |  |





| 명칭 | 위치(경위도) | 시설능력 (G/T, 척) | 정박지 위치도 |
|-----------------------|---|-------------------------|--|
| <p>전체 구역 (신항)</p> | <p>다음 각 호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의 안쪽 해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N 35-01-13.1, E 128-54-21.8 2. N 35-00-38.0, E 128-55-07.0 3. N 35-00-08.5, E 128-55-14.5 4. N 34-59-24.1, E 128-51-31.6 5. N 35-00-10.4, E 128-51-18.9 6. N 35-00-22.1, E 128-52-28.5 7. N 35-00-52.6, E 128-52-20.9 | |  |
| <p>W-1</p> | <p>N 35-00-21.0, E 128-53-45.0</p> | <p>80,000㎡하 × 1</p> |  |
| <p>W-2</p> | <p>N 35-00-28.5, E 128-54-33.0</p> | <p>80,000㎡하 × 1</p> |  |




| | | | |
|------------|------------------------------------|----------------------------|--|
| <p>U-1</p> | <p>N 35-00-00.0, E 128-51-44.2</p> | <p>30,000㎡ × 1</p> |  |
| <p>U-2</p> | <p>N 35-00-06.5, E 128-52-22.0</p> | <p>30,000㎡ × 1</p> |  |
| <p>U-3</p> | <p>N 35-00-14.0, E 128-53-01.5</p> | <p>30,000㎡ × 1</p> |  |
| <p>U-4</p> | <p>N 35-00-42.0, E 128-52-50.5</p> | <p>30,000㎡ × 1</p> |  |
| <p>U-5</p> | <p>N 35-00-49.0, E 128-53-30.5</p> | <p>30,000㎡ × 1</p> |  |
| <p>U-6</p> | <p>N 35-00-54.0, E 128-54-10.0</p> | <p>30,000㎡ × 1</p> |  |

【별표 2】 정박금지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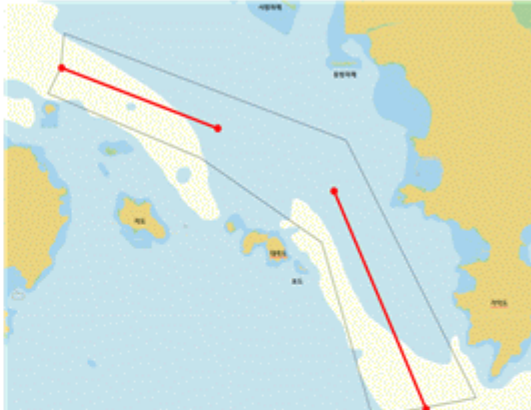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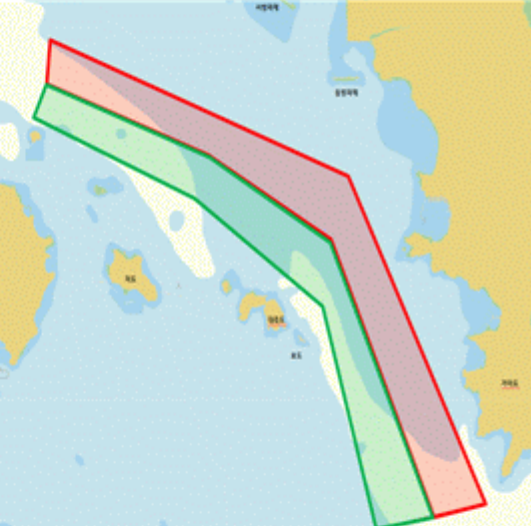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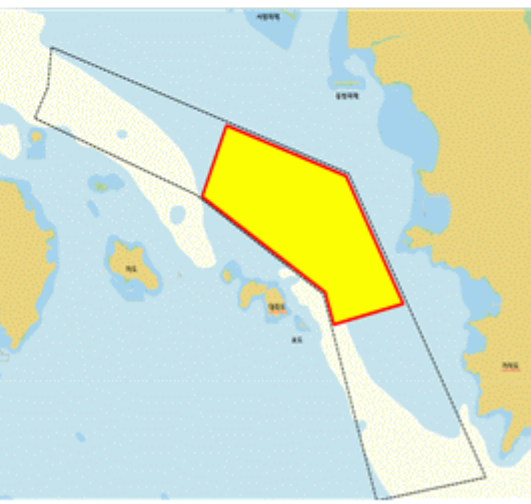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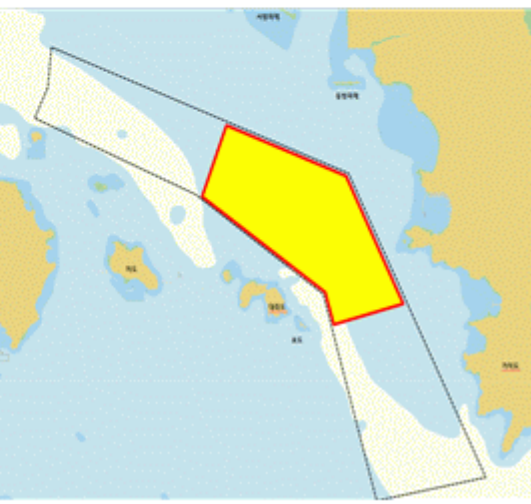
| 구역 | 위치 | 정박금지 구역도 |
|-----------------------------|---|--|
| <p>남외항 및 감천항 입출항 구역</p> | <p>다음 각 호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의 안쪽 해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N 35-02-42.0 E 129-01-52.0 2. N 35-02-39.5 E 129-02-13.5 3. N 35-01-40.2 E 129-02-36.9 4. N 35-01-25.8 E 129-01-21.0 |  |

【별표 3】 항로






| 항로별 | 항로구역 | 항로구역도 |
|------|--|--|
| 제1항로 | 다음 각 호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의 안쪽 해면 1. N 35-06-21.2 E 129-03-39.8 2. N 35-04-38.6 E 129-06-35.9 3. N 35-04-12.2 E 129-06-50.8 4. N 35-04-42.1 E 129-07-09.8 5. N 35-04-45.8 E 129-06-46.9 6. N 35-06-30.2 E 129-03-47.9 |  |
| 제2항로 | 다음 각 호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의 안쪽 해면 1. N 35-05-05.5 E 129-01-58.0 2. N 35-04-49.6 E 129-01-58.2 3. N 35-02-39.5 E 129-02-13.5 4. N 35-02-42.0 E 129-01-52.0 5. N 35-04-47.7 E 129-01-53.6 6. N 35-05-09.8 E 129-01-52.7 |  |
| 제3항로 | 다음 각 호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의 안쪽 해면(전체항로) 1. N 35-04-11.2 E 128-59-59.7 2. N 35-03-28.2 E 129-00-01.9 3. N 35-03-10.1 E 129-00-11.5 4. N 35-02-57.5 E 129-00-25.7 5. N 35-02-44.7 E 129-00-36.9 6. N 35-02-48.3 E 129-00-54.7 7. N 35-03-03.2 E 129-00-30.6 8. N 35-03-30.6 E 129-00-16.8 9. N 35-04-11.2 E 129-00-09.4 |  |
| | (입항항로) 1. E 35-02-48.3 E 129-00-54.7 2. E 35-02-15.9 E 129-01-41.3 3. E 35-01-54.2 E 129-01-32.5 4. E 35-02-27.0 E 129-01-00.0 (출항항로) 1. N 35-02-27.0 E 129-01-00.0 2. N 35-01-21.7 E 129-01-22.4 3. N 35-01-16.6 E 129-00-56.6 4. N 35-02-44.7 E 129-00-36.9 5. 삭제 |  |



| 항로별 | 항로구역 | 항로구역도 |
|------|--|--|
| 제3항로 | (분리대: 붉은색 삼각형) 1. N 35-02-27.0 E 129-01-00.0 2. N 35-01-54.0 E 129-01-32.7 3. N 35-01-25.8 E 129-01-21.0 |  |
| 제4항로 | 다음 각 호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의 안쪽 해면 1. N 35-05-57.7 E 129-02-31.9 2. N 35-05-47.8 E 129-02-19.7 3. N 35-05-46.1 E 129-02-20.7 4. N 35-05-56.4 E 129-02-33.4 |  |
| 제5항로 | 다음 각 호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의 안쪽 해면 1. N 35-02-27.0 E 128-46-14.3 2. N 35-03-30.6 E 128-46-46.9 3. N 35-03-52.0 E 128-46-49.0 4. N 35-03-51.18 E 128-47-27.24 5. N 35-03-16.92 E 128-47-10.69 6. N 35-02-44.47 E 128-47-10.78 7. N 35-02-03.12 E 128-47-32.33 |  |

【별표 4】 가덕수도(입출항항로)

| 항로 별 | 항로 구역 | 항로 구역도 |
|--------------------------|--|--|
| <p>중앙 분리선 (붉은 선)</p> | <p>다음 각 호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N 35-02-53.4 E 128-43-16.3 2. N 35-02-12.4 E 128-45-30.0 <p>다음 각 호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N 35-01-26.4 E 128-47-18.8 2. N 34-58-31.8 E 128-48-33.7 |  |
| <p>입항항로 (적색)</p> | <p>다음 각 호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의안쪽 해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N 34-58-41.5 E 128-49-19.5 2. N 35-02-01.4 E 128-47-37.8 3. N 35-03-19.5 E 128-43-23.5 4. N 35-02-53.4 E 128-43-16.3 5. N 35-02-12.4 E 128-45-30.0 6. N 35-01-26.4 E 128-47-18.8 7. N 34-58-31.8 E 128-48-33.7 |  |
| <p>출항항로 (녹색)</p> | <p>다음 각 호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의 안쪽 해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N 34-58-21.4 E 128-47-46.1 2. N 35-00-52.9 E 128-47-01.0 3. N 35-01-46.6 E 128-45-19.3 4. N 35-02-28.5 E 128-42-59.9 5. N 35-02-53.4 E 128-43-16.3 6. N 35-02-12.4 E 128-45-30.0 7. N 35-01-26.4 E 128-47-18.8 8. N 34-58-31.8 E 128-48-33.7 |  |
| <p>주의해역 (노랑색)</p> | <p>다음 각 호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의 안쪽 해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N 35-01-07.2, E 128-48-05.4 2. N 35-02-01.2, E 128-47-37.5 3. N 35-02-37.0, E 128-45-42.3 4. N 35-01-47.4, E 128-45-18.7 5. N 35-00-53.0, E 128-47-01.3 6. N 35-00-23.2, E 128-47-10.2 <p>※ 특정조건 '선박이 밀집되거나 교차 항해의 우려가 있는 해역' 으로 별표5에서 정한 항행 최고속력의 범위 안에서 항행하여야 함</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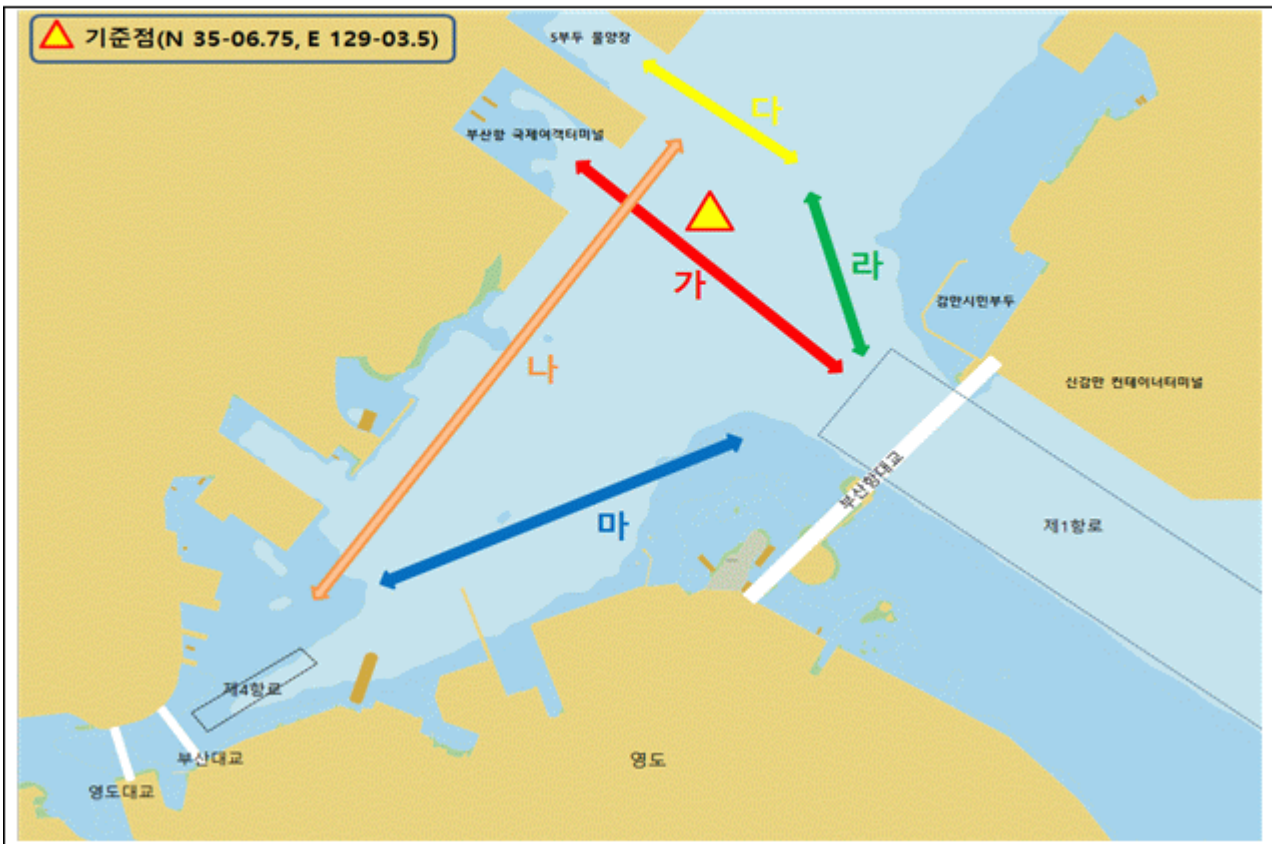
[별표 5] 항행 최고 속력

| 구역 | 위치도 | 대상 선박 | 항행 최고 속력 (대지속력) |
|--|---|-----------------|--------------------|
| 1. 북내항: 두 지점(N 35-06-13.26, E 129-03-48.63와 N 35-06-26.09, E 129-04-1.01)을 연결한 선과 영도대교 사이 해면 |  | 총톤수 500톤 미만 여객선 | 12노트 이하 |
| | | 기타 모든 선박 | 8노트 이하 |
| 2. 북외항: 두 지점(N 35-06-13.26, E 129-03-48.63와 N 35-06-26.09, E 129-04-1.01)을 연결한 선과 두 지점(N 35-05-22.4, E 129-04-30.2와 N 35-06-13.4, E 129-04-30.2)을 연결한 선의 안쪽 해면 |  | 1,000톤 이상 선박 | 8노트 이하 |
| 3. 오륙도방파제와 조도방파제 인근 좁은 수로 |  | 모든 선박 | 8노트 이하 |
| 4. 감천항: 동·서 방파제 안쪽 해면 |  | 모든 선박 | 10노트 이하 |
| 5. 다대포항: 해경 정비창 방파제 ~ 낮개 방파제 안쪽 해면 |  | 모든 선박 | 7노트 이하 |

| | | | |
|---|---|--------------|----------------|
| <p>6. 신항: 3부두 서측 끝단(N 35-04-39, E 128-47-06)과 호남도 북서측 끝단(N 35-03-51.19, E 128-47-27.20)을 연결한 선의 동측 해면</p> |  | <p>모든 선박</p> | <p>12노트 이하</p> |
| <p>7. 가덕수도(입출항항로) 주의해역</p> |  | <p>모든 선박</p> | <p>12노트 이하</p> |

[별표 6]

①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전면 해역 운항 항법



② 감만부두 동측안벽 통항

